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金勇錫)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8
----------	------

발의연월일 : 2016년 5월 19일

발 의 자 : 金勇錫(서초), 성중기, 이상목,
김기만, 金光壽(노원), 최판술,
유 청, 金慶子(강서), 최호정,
김현기, 우창윤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현 조례상으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 정당 소속 의원들의 예결위 참여가 제약되어 있는 바, 국회 및 다른 시도의회 사례를 참조하여 소수정당 소속 의원에게도 예결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회 내 원활한 정당정치의 회복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단서).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타 사항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를 “의장과 협의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이하 “비교섭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1조제3항 단서 중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u>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u>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p> <p>② <u>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u>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p> <p>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은 <u>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u>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p>	<p>제4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u>의장과 협의한 후</u>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p> <p>② <u>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이하 “비교섭단체”라 한다)</u>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p> <p>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u>다만,</u>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은 <u>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및</u>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p>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상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관련한 규정을 변경 하려는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3783-1861)